

‘낙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장 철 호 | 한국어촌어항협회 전무이사

1. 서 론

지난 9월 10일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을 위한 ‘낙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었다. 기존에 5개 부처 34개 법령으로 분산·관리되던 낙시산업이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되고, 주무부처도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되었다.

최근 주5일제 확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여가·레저 활동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낙시서비스 및 산업은 여전히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수산자원남획·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낙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에 시행된 ‘낙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은 동법 제43조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어, 과거 주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육성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낙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 ‘낙시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 내용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1조는 그 목적을 ‘낙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낙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낙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 법의 대상이 낚시인이나 낚시산업종사자에 한정됨이 아니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환경과 수산자원을 공유하는 일반 국민 모두를 아우름을 뜻하며, 낚시산업의 발전을 농어촌 지역경제의 발전과 연계하여 도모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간 낚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국민들과 공유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른 세부 변동사항을 낚시인,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1) 낚시인

① 낚시제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이 외 시·도에서 추가적으로 조

례로 설정한 기준도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한가지 더 유의할 사항은 '내수면 어업법'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은 각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한 낚시통제구역에 출입해선 안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위반시 과태료 20만원(1회), 40만원(2회), 80만원(3회)이 부과된다.

③ 낚시도구나 미끼를 무단으로 투기해서는 안된다.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릴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④ 유해 낚시도구나 부적합 미끼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또한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 허용기준 이상인 미끼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시 과태료 75만원(1회), 150만원(2회), 300만원(3회)가 부과된다. 다만 납추의 경우 사용은 2013년 9월 10일까지, 판매는 2013년 3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⑤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의 경우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⑥ 비영리법인·낙시단체 등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며 명예감시원 제도가 운영된다.

정부 및 지자체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낙시인과 낙시관련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및 낙시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낙시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낙시인 및 낙시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낙시터 안전관리, 수산자원 보호 등에 있어 감시·지도 및 계몽활동을 수행한다.

2) 낙시터업자

① 낙시터 운영 가능 지역이 기존 내수면에서 해수면까지 확대된다.

낙시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내수면은 물론 바다, 바닷가, 해수면까지 확대된다. 사유수면은 등록, 그 외 수면은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낙시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② 낙시터업 허가 및 등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5년에 불과하던 낙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은 허가의 경우 2회까지, 등록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가능하다.

③ 낙시터업 허가(등록) 전에 안전·편의 시설 등을 갖추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낙시터를 운영하려면 낙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낙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료부터 안전성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행행위 시설 적발시 영업정지를 거쳐 허가(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

④ 낙시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낙시터업을 경영하는 경우 등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낙시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낙시터업을 경영한 자는 낙시터에 설치한 시설·장비나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는 등 낙시터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원상회복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하다.

⑤ 블루길·베스 등의 어종을 낙시터에 방류할 수 없으며, 일정한 수질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을 낙시터에 방류해선 안 되며, 수질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낙시터 수질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위반시 과태료 75만원(1회), 150만원(2회), 300만원(3회)가 부과된다.

⑥ 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시 낙시터업 지위승계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등으로 종전의 낙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제재처분 효과도 승계한다.

⑦ 우수낙시터로 지정받는 경우 시설·운영 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낙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낙시터 중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낙시터를 우수낙시터로 지정하여, 낙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낙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면 농림수산물부에 신청하면 된다.

⑧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낙시터업자는 낙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의무이수는 2013년 9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1회), 75만원(2회), 100만원(3회)가 부과된다.

⑨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낙시터업자는 낙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1차), 3개월(2차), 6개월(3차) 처분이 적용된다.

3) 낙시어선업자

① 선령 25년 이하의 알루미늄선도 낙시어선업을 신고할 수 있다.

기존 낙시어선업법 시행령 상의 선령기준에는 알루미늄선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낙시관리 및 육성법' 상에는 포함되어 선령 25년 이하의 알루미늄선으로도 낙시어선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②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갖추고 낙시어선업 신고 전 안전성 검사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조명·자기점화등·핸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낙시어선업 신고 전에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농림수산물

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료부터 안전성 검사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③ 음주조종의 기준이 강화된다.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는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할 수 없다. 음주조종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0.05% 이상으로 강화된다.

④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낙시어선업자 역시 낙시터업자와 마찬가지로 낙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의무이수는 2013년 9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1회), 75만원(2회), 100만원(3회)가 부과된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시관리 및 육성법'은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낙시인들은 '낙시관리 및 육성법' 때문에 낙시활동에 제한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낙시관리 및 육성법'은 낙시인들의 자유로운 낙시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다.

'낙시관리 및 육성법'은 수산자원 남획, 유해낙시도구 사용 등 낙시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하고, 낙시인 전체의 권익 향상과 쾌적한 낙시환경 조성을 위해 낙시인·낙시단체·낙시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률이다.

작년 한해에도 34명의 소중한 인명이 낙시 중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 '낙시관리 및 육성법'은 철저한 사고예방을 통해 낙시인들의 안전한 낙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며,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가족, 친지와 함께 즐기는 쾌적한 낙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